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27

발의연월일: 2020. 8. 7.

발 의 자:정청래·김승원·김경만

이성만・김남국・박성준

김민석 • 윤미향 • 오영환

이상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층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내던지 거나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후 비닐봉지에 싸서 유기하는 등 반려동 물에 대한 학대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물학대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음.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경우 잔인한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강력한 처벌, 행정조치,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

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또한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동물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나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의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를 "시·도지사와"로, "제2호 및 제3호에"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에"를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4.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동물
- 1.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기간
-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제한받는 기간
- 3. 그 밖에 피학대 동물의 생명, 안전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물 소유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소유권 제한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 소유권 제한의 선고를 법 원에 청구할 수 있다.
 - 1.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 2. 제1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동물의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의 생명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대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학대행위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동물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u>시·</u>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u>시·</u>
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	도지사와
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	
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	
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	
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	
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	
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	
며, <u>제2호 및 제3호에</u> 해당하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	
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l
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동물

- ② (생략)
-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 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u>농림축산식</u>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u>다음 각 호의</u>	
<u>기간 동안</u>	
1.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기간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	
권을 제한받는 기간	
3. 그 밖에 피학대 동물의 생	
명, 안전 등을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u>다만, 동물 소유자가 제8</u>	
<u>다만, 동물 소유자가 제8</u> <u>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학대</u>	
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학대	

1.・2. (생 략) ② (생 략) <u><신 설></u> 하다.

- 1.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20조의2(소유권 제한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 소유권 제
 한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1.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으는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중인 경우
 - 2. 제1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동물의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 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의 생 명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 대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을 선고하여야 한 다.
 - ③ 학대행위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동물

<u>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u> <u>다.</u>